

발간등록번호

전북교육 2021-127

전라북도교육청 - 전북교사노동조합

2020 단체협약

2021. 1. 28.



전라북도교육청



전북교사노동조합



목 차

전 문

제1조 【적용범위】	1
제2조 【협약의 존중】	1
제3조 【조례·규칙의 제·개정】	1
제4조 【노조 활동의 보장】	1
제5조 【노조 활동 중 재해】	3
제6조 【전북교사노조와 사전 협의】	3
제7조 【시설 편의제공】	3
제8조 【통지 및 문서 발송 편의제공】	3
제9조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4
제10조 【교권 보호】	4
제11조 【교육 활동 중 사고로부터의 교권 보호】	5
제12조 【교권 침해 피해 교사 보호】	5
제13조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6
제14조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6
제15조 【연구 환경 조성】	7
제16조 【컨설팅 장학】	7
제17조 【연구학교】	7
제18조 【교사 승진 및 인사 제도 개선】	8
제19조 【학교 인사자문위원회】	8
제20조 【교사 인사관리원칙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8
제21조 【전보 제도】	9
제22조 【교사 정원수 확보 및 교육지원 강화】	9
제23조 【학교업무 정상화】	9
제24조 【교사의 근무조건 향상】	12
제25조 【교사의 문화 활동 지원】	13
제26조 【노동 및 휴게 시간】	13
제27조 【교사 휴가 업무처리】	13
제28조 【임금】	13
제29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13
제30조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	14

제31조 【교수·학습과정】	14
제32조 【민주적인 학교 운영】	15
제33조 【교구 및 교과서 선정】	15
제34조 【방과후학교】	15
제35조 【자율학습 등】	16
제36조 【감사제도】	16
제37조 【학교평가 개선】	16
제38조 【교육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의 합리화】	16
제39조 【학부모 부담 교육비 경감】	16
제40조 【사립학교 지도·감독】	17
제41조 【사립학교의 인사】	17
제42조 【교사의 후생복지】	17
제43조 【내부고발자의 인권보호】	17
제44조 【출장여비와 연구비】	18
제45조 【학급운영비】	18
제46조 【여교사의 권리와 모자보호】	18
제47조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규제 등】	19
제48조 【유치원 교육 여건 개선】	19
제49조 【특수교육 여건 개선】	20
제50조 【특성화 고교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20
제51조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	20
제52조 【학생 복지】	21
제53조 【학생 자치활동】	22
제54조 【학교 급식의 개선】	22
제55조 【장애인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22
제56조 【보건교육의 활성화】	22
제57조 【전문상담교사의 근무 조건 향상】	23
제58조 【학교상담실 환경 개선】	23

부 칙

제1조 【유효기간】	23
제2조 【용어의 명확화】	23
제3조 【협약갱신】	23
제4조 【보충협약 및 재교섭】	24
제5조 【이행계획서 작성】	24
제6조 【이행방법】	24
제7조 【협약의 보관】	24

전 문

<p>전라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전북교사노동조합(이하 전북교사노조라 한다)은 『헌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의 노동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하여 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p>	<p>민주시민교육과</p>
<p>제1조【적용 범위】</p>	
<p>이 협약은 교육청과 전북교사노조, 그리고 공립학교 교사인 전북교사노조의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또한, 이 협약의 내용이 사립학교에서도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이 협약에서 학교는 공립 유, 초, 중, 고, 특수 학교를 모두 포함한다.</p>	<p>민주시민교육과</p>
<p>제2조【협약의 존중】</p>	
<p>교육청은 이 협약사항에 대해서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북교사노조와 협의없이 저하시킬 수 없다.</p>	<p>민주시민교육과</p>
<p>제3조【조례·규칙의 제·개정】</p>	
<p>교육청은 교사의 노동조건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 규칙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전북교사노조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경우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반영한다.</p>	<p>민주시민교육과</p>
<p>제4조【노조 활동의 보장】</p>	
<p>① 교육청은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게시 또는 공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교사가 알 수 있도록 한다.</p>	<p>민주시민교육과</p>
<p>② 다음 각 호의 조합활동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p>	<p>민주시민교육과</p>

1. 교육청과 전북교사노조와의 단체교섭에 교섭위원으로 참석	
2. 교육청과 전북교사노조 간의 정책협의회	
3. 대의원과 중앙위원으로서 정기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참석	
4. 노사가 합의한 교육 및 행사	
③ 교육청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노조가 주관하는 월 1회, 2시간 이내의 교내·외 조합원 교육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방과 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민주시민교육과
④ 교육청은 바람직한 교사 노사관계 형성과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이 직접 관장하는 교원 연수기관의 자격연수 및 신규교사연수 과정에 노사관계 이해 연수를 실시하고, 전북교사노조의 강사참여를 보장한다.	민주시민교육과
⑤ 교육청은 전북교사노조의 전임자가 임기를 마치고 복귀할 시에는 원소속 학교로 복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임 충원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발령한다.	교원인사과
⑥ 교육청은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과 직속기관이 운영하는 기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전북교사노조 홈페이지를 연결한다.	미래인재과
⑦ 교육청은 학교장이 교무실 등 학교 게시판에 전북교사노조의 홍보공간을 마련하도록 권장한다.	민주시민교육과
⑧ 교육청은 수업 및 학교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홍보활동(신문, 간행물, 소식지, 행사 안내 등의 유인물 배포)등을 학교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민주시민교육과
⑨ 교육청은 교사의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세미나, 공청회 등에 전북교사노조가 요청 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민주시민교육과
⑩ 교육청은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여 승급, 승진, 연금 산정, 전보인사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교원인사과
⑪ 전북교사노조가 지정하는 전임자에 한하여 JBEdU 메신저+에서 제공하는 사용자그룹 사용자 수를 1000명으로 증설 제공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하도록 한다.	미래인재과

<p>제5조【노조 활동 중 재해】</p>	
<p>교육청은 전북교사노조의 전임자 또는 비전임 조합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교섭 관련 협의와 정책협의회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원 연금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원 재해로 인정되도록 법령 개정 시 의견을 제출한다. 단, 재해보상 여부는 공무원 재해보상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다.</p>	재무과
<p>제6조【전북교사노조와 사전 협의】</p>	
<p>교육청은 공무원노조 등 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시 교사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교사노조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p>	민주시민교육과
<p>제7조【시설 편의제공】</p>	
<p>① 교육청은 전북교사노조가 요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규모의 사무실 및 조합활동에 필요한 집기, 사무기기 등 통상적인 비품을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제공하도록 한다.</p>	민주시민교육과
<p>② 교육청은 전북교사노조가 각종 회의 또는 교육을 위하여 장소, 통신 및 방송망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청이 관할하는 각종 시설·연수기관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제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p>	재무과
<p>제8조【통지 및 문서 발송 편의제공】</p>	
<p>① 교육청은 전북교사노조의 자료제공요청이 있을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에 최대한 협조한다.</p>	민주시민교육과
<p>② 교육청과 전북교사노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상호 통지한다.</p>	민주시민교육과

<p>1. 교육감이 통지할 자료</p> <p>가. 교육청 및 직속 기관의 조직표</p> <p>나. 교육통계연보 등 교육청 등록 각종 간행물</p> <p>다. 각급 학교에 보내는 교원단체 관련 공문</p> <p>라. 단체협약 이행 관련 공문</p> <p>마.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p>	<p>민주시민교육과</p>
<p>2. 전북교사노조가 통지할 자료</p> <p>가. 규약의 변경사항</p> <p>나. 전북교사노조의 임원 현황 및 명단</p> <p>다. 전북교사노조가 발행하는 각종 정기간행물</p> <p>라. 매년 3월 1일 현재 조합원수</p>	<p>민주시민교육과</p>
<p>③ 교육청은 전북교사노조가 교육청에 각종 문서를 발송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이첩을 요구할 경우 교육적으로 필요한 문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p>	<p>민주시민교육과</p>
<p>제9조【정책협의회 구성·운영】</p>	
<p>교육청과 전북교사노조는 단체협약 이행점검, 전북교육정책, 교육 현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p>	<p>민주시민교육과</p>
<p>① 정책협의회는 교섭이 없는 시기에 연 2회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양측 합의에 의해 추가 개최한다.</p>	<p>민주시민교육과</p>
<p>② 교육청의 대표는 정책협의회 사안의 성격에 따라 국장급 이상으로 한다.</p>	<p>민주시민교육과</p>
<p>③ 협의회는 7일 전에 상대방에게 문서 또는 통신으로 협의를 요청하며, 협의회 개최 예정일 5일 전까지 협의 안건을 통보한다.</p>	<p>민주시민교육과</p>
<p>제10조【교권 보호】</p>	
<p>① 교육청은 연 1회 이상 학생, 학생의 보호자, 교사 대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교육 자료를 보급하여 각급 학교가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각급 학교는 연 1회 이상 학생, 학생의 보호자, 교사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한다.</p>	<p>교원인사과</p>

② 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수업 방해, 정당한 교사의 지도거부 등을 행하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 외 생활지도 규정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민주시민교육과
③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교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도한다.	미래인재과
④ 교육청은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를 위해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교원인사과
제11조【교육 활동 중 사고로부터의 교권 보호】	
① 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 교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해당 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재무과
②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교사가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청 법률지원단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교원인사과
③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일로 인한 교사를 당사자로 하는 민·형사의 소송 발생 시 교사책임배상보험을 통해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재무과
④ 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사 배상책임보험에 일괄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	교원인사과
제12조【교권 침해 피해 교사 보호】	
① 교육청은 전북교사노조가 추천하는 자를 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교원인사과
② 교육청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신고가 접수되고 교사(전북교사노조 소속) 및 학교가 요구 시 이 사례에 대해 전북교사노조와 함께 조사를 실시한다.	교원인사과
③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교사(전북교사노조 소속)에 대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에 불응하는 학교 관리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전북교사노조와 함께 조사를 실시하며 결과와 조치사항을 통보한다.	교원인사과
④ 교권침해 대처방안을 매뉴얼화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며,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교원인사과

<p>제13조【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p>	
<p>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강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p>	<p>교원인사과</p>
<p>제14조【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p>	
<p>① 교육청은 교육청이 인정하는 특수분야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자비부담 직무연수에 대하여 교사 1인당 지원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증액하도록 노력한다.</p>	<p>교원인사과</p>
<p>② 교육청이 주관하는 직무연수의 연수 대상자는 가급적 경력, 연수과정의 내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단, 의무연수과정은 예외로 한다.</p>	<p>교원인사과</p>
<p>③ 교육청은 교육청 주관 연수프로그램 편성 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전북 교사노조는 수요조사 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p>	<p>교원인사과</p>
<p>④ 교원이 방학 중 국외 자율연수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국외 자율연수로 처리하고,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도록 한다.</p>	<p>교원인사과</p>
<p>⑤ 교육청은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신청을 매년 2회 받아 개설한다.</p>	<p>교원인사과</p>
<p>⑥ 교육청은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은 이후에 교사가 희망할 경우, 교과별 30시간 이상의 연수를 일정 기간마다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p>	<p>교원인사과</p>
<p>⑦ 교육청은 2급 (정)교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경력 3년 이상이면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p>	<p>교원인사과</p>
<p>⑧ 교육청은 교육청 주관 자격연수와 직무연수에 대한 연수 경비를 지원하고 연수 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p>	<p>교원인사과</p>
<p>⑨ 교육청은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교사·교감 자격연수를 방학 중에 실시하도록 노력한다.</p>	<p>교원인사과</p>

제15조【연구 환경 조성】	
① 교육청은 교사들의 자율적인 교과 모임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할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정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며, 풍부한 경험을 갖춘 교원, 교육전문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학교교육과 교육혁신과 미래인재과 인성건강과
② 교육청은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지원하도록 권장한다.	교육혁신과
③ 교육청은 근무시간 내에 교사가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을 수강할 경우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근무상황은 출장(연수)으로 하되, 근무시간 내에는 외출, 조퇴, 연가 등을 활용한다.	교원인사과
④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교과단위의 연구실 확보 요청이 있을 경우 환경 개선사업 또는 학교 자체 교실개선사업 추진 시 건물 구조 안전 유무를 검토한 후 변경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과협의회 및 학년협의회 개최 시에는 필요한 협의회비를 지급하도록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을 통해 지도한다.	시설과 학교교육과
⑤ 교육청은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교원의 교육 강사 수당은 강사료 기준 변경 시 관련 부서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예산과
제16조【컨설팅 장학】	
수업관련 컨설팅 장학은 학교 구성원의 자율을 존중하고, 장학위원은 유용한 교수-학습자료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한다.	학교교육과
제17조【연구학교】	
① 교육청이 자체 지정하는 연구·시범학교 공모는 학교교육계획 수립 이전에 완결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학기 중에 추가로 공모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	학교교육과

② 교육청은 전라북도교육청 연구학교 선정심의회를 구성할 때 교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학교교육과
제18조【교사 승진 및 인사 제도 개선】	
① 교육청은 미래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사승진체계가 마련되도록 교장, 교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의 임용 및 승진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교원인사과
② 교육청은 학교가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를 신청할 때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장공모제 관련 연수를 실시한다.	교원인사과
제19조【학교 인사자문위원회】	
①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운영되도록 지도한다. 각 학교의 인사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교원인사과
1. 교무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2. 보직교사 임면에 관한 사항	
3. 교과 전담교사와 학급 담임 배정에 관한 사항	교원인사과
4. 포상 후보자와 각종 연수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사 인사에 관한 주요 사항(임신, 출산 교사 보호 조치 등)	
② 교육청은 각 학교 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그 결정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반영되도록 지도한다.	교원인사과
③ 인사자문위원회는 당연직인 교(원)감 1인과 성별, 교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교무회의에서 선출된 교사대표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교원인사과
제20조【교사 인사관리원칙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교육청은 인사자문위원회에 전북교사노조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노력한다.	교원인사과

제21조【전보 제도】	
① 교육청은 교사의 정기 전보 발령을 학사 일정과 주거지 확보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발령일 20일 이전에 발표하도록 노력한다.	교원인사과
② 교육청(교육지원청)은 정기전보 대상자의 학교별·과목별 예상 인원을 내신 희망원 작성 전까지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한다.	교원인사과
③ 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본인의 전보 자료를 공개 요청할 경우 본인의 자료에 한하여 공개한다.	교원인사과
④ 교육청은 성희롱 및 교권 피해 등으로 인한 피해 교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희망과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긴급전보 할 수 있다.	교원인사과
제22조【교사 정원수 확보 및 교육지원 강화】	
① 교육청은 정규직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행·재정적 노력을 한다.	교원인사과
② 교육청은 학교에서 사회복지요원을 신청할 경우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민주시민교육과 교육혁신과
제23조【학교업무 정상화】	
① 교육청은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각종 외부행사에 교사, 학생, 학부모 동원을 억제한다.	정책공보관
② 교육청은 학교장이 위임전결규정을 정비하여 결재과정을 간소화하도록 지도한다.	정책공보관
③ 교육청은 국회·도의회 등의 자료 요구 시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급적 이미 구축된 교육통계자료를 활용한다.	정책공보관
④ 준거집단 활동은 지역화하도록 추진하며 교원의 의사에 반한 업무분장을 하지 않는다.	민주시민교육과
⑤ 교육청은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시 가급적 학교별 추천 인원제 제한을 두지 않도록 지도한다.	미래인재과

⑥ 교육청은 방과후업무를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교육혁신과
⑦ 교육청은 돌봄업무를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교육혁신과
⑧ 교육청은 관계회복과 소통중심의 학교폭력전담기구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육청의 경직성 보고체계 및 공문발송을 축소하도록 노력한다.	민주시민교육과
⑨ 교육청은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활동(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이외의 행정업무는 경감하도록 노력한다.	정책공보관
⑩ 교육청은 학생대상 안전교육 이외의 개학기 학교주변 교통분야 안전점검(교통지도 포함)과 학교안전 인프라 현황조사를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정책공보관
⑪ 교육청은 법령에 의한 교직원 의무교육 및 연수(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를 통합개설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건강과
⑫ 교육청은 CCTV 운영업무에 필요한 CCTV 유지보수, 교체, 폐기 등의 시설업무를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민주시민교육과
⑬ 교육청은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청구 관련 업무분장 시 교직원 협의를 거치도록 지도한다.	재무과
⑭ 교육청은 외부행사 안내, 각종 소식지, 공통지시 전달사항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노력한다.	정책공보관
⑮ 교육청은 강사수당 지급 업무를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정책공보관
⑯ 교육청은 강사 공고 및 계약을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정책공보관
⑰ 교육청은 교육급여 업무를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교육혁신과
⑱ 교육청은 전출입 업무를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학교교육과
⑲ 교육청은 컴퓨터 구입 및 수리업무를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정책공보관

⑳ 교육청은 학교 내 각종 위원회 회의록 간소화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한다.	총무과 감사관
㉑ 우유공급의 대금 수납은 행정실에서 처리하도록 학교장이 추진한다.	인성건강과
㉒ 교육청은 (테마식)현장체험학습 답사의 경우 보험에 가입된 렌터카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민주시민교육과
㉓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교무업무 관련 대외공문서 기안 및 발송은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정책공보관
㉔ 교육청은 스쿨뱅킹 미납 학생 독촉 업무 등을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재무과 예산과
㉕ 교육청은 안전지킴이 채용 및 급여 지급, 복무관리를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민주시민교육과
㉖ 교육청은 교육통계 업무를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총무과
㉗ 교육청은 정보공시 업무를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총무과
㉘ 교육청은 방송실 기계 유지 보수 및 시설 장비 구입을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미래인재과
㉙ 교육청은 돌봄전담사, 방과후강사, 기간제 교사 등의 성범죄 조회 업무를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교육혁신과 교원인사과
㉚ 교육청은 체험학습 학생부담금 징수, 지출, 정산, 반환 업무를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민주시민교육과
㉛ 교육청은 안심알리미 신청 업무를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민주시민교육과
㉜ 교육청은 현장학습 차량 배정(배차)업무를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민주시민교육과

<p>제24조【교사의 근무조건 향상】</p>	
<p>① 수업 시수는 학교별·교과별 교사 현황 및 특성, 업무분장 등을 고려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조정하나, 중등교사 수업시수를 주당 18시간(창의적 체험 활동 포함)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p>	교원인사과
<p>②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은 단위학교에서 교사결원으로 인한 수업결손이 발생할 경우 계약제교사 운영 지침에 따라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p>	교원인사과
<p>③ 교육청은 기간제 강사채용 시 강사 자격기준 제시, 선정위원회 구성 및 채점, 회의록 작성 외의 강사채용공고 및 계약, 제반 서류 접수, 강사수당 지급 품의를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p>	교원인사과
<p>④ 교육청은 기간제교사 및 강사임용 사유 발생 시, 학교장으로 하여금 기간제교사 및 강사를 임용하여 수업결손을 방지하도록 지도하며, 교육청 누리집에 구인·구직란을 운영하여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기간제 교사 및 강사를 임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p>	교원인사과
<p>⑤ 교육청은 부득이 해당 학교 교사가 보결수업을 할 경우 적정액의 보결 수업 수당을 단위학교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노력한다.</p>	교원인사과
<p>⑥ 교육청은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무업무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p>	미래인재과
<p>⑦ 교육청은 교사의 초상권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학교 홈페이지와 학교 앨범 제작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p>	미래인재과
<p>⑧ 교육청은 학급 내 위기학생 발생 시 관리자가 협력하도록 지도한다.</p>	민주시민교육과
<p>⑨ 교육청은 필요한 문서만 발송하도록 ‘문서통제관’을 지정하여 학교 공문서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p>	정책공보관
<p>⑩ 교육청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교로 발송하는 공문의 제목 앞에 ‘제출’, ‘참석’ 등의 공문서 성격을 표시하는 ‘공문서 성격표시제’를 시행하도록 노력한다.</p>	정책공보관

<p>제25조【교사의 문화 활동 지원】</p>	
<p>교육청은 학교 체육 시설을 교사가 이용하고자 할 때에 관련 조례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p>	<p>인성건강과</p>
<p>제26조【노동 및 휴게 시간】</p>	
<p>① 교육청은 교사의 초과근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p>	<p>교원인사과</p>
<p>② 교육청은 방학과 재량휴업일에 교사의 일직성 근무를 폐지한다.</p>	<p>교원인사과</p>
<p>③ 교육청은 방학과 재량휴업일에 돌봄교실이나 방과후수업의 관리를 위하여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근무를 명하지 않도록 지도한다.</p>	<p>교육혁신과</p>
<p>④ 교육청은 교사에게 교통지도 및 그와 관련한 업무를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p>	<p>민주시민교육과</p>
<p>제27조【교사 휴가 업무처리】</p>	
<p>교육청은 교(원)장이 휴가 결재 과정에서 교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한다.</p>	<p>교원인사과</p>
<p>제28조【임금】</p>	
<p>교육청은 학교회계에 긴급돌봄 수당을 편성하여 교사가 긴급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시간당(60분) 10,000원의 긴급돌봄 수당을 지급하도록 안내한다.</p>	<p>교육혁신과</p>
<p>제29조【학급당 학생 수 감축】</p>	
<p>교육청은 일부 과밀학급의 학습여건 개선과 함께 대규모 학교의 학습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수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p>	<p>행정과</p>

제30조【학교 도서관의 활성화】	
① 교육청은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민간 학술 데이터베이스 및 국가전자도서관 원문정보를 교사와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미래인재과
② 교육청은 도서관담당 교사나 사서교사가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급적 다른 업무는 경감하도록 지도한다.	교육혁신과
③ 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이 항상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교육혁신과
④ 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초·중·고등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할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효과적인 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교육혁신과 교원인사과
⑤ 교육청은 사서교사의 전문성 확보와 창의적인 학교 도서관 운영을 위해 매년 학교도서관 및 독서 관련 직무연수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교육혁신과
⑥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도서구입 시 학교 도서관운영위원회(도서선정위원회)의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하도록 지도한다.	교육혁신과
제31조【교수·학습과정】	
①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교육과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교교육과
② 교육청은 전북교육청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사의 경우 대표성이 있는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교육과
③ 학교운동부 육성학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규수업을 마치고 훈련에 임하도록 한다.	인성건강과

제32조【민주적인 학교 운영】	
① 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선출이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한다.	민주시민교육과
② 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상정 등이 법적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한다.	민주시민교육과
③ 교육청은 교무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한다.	민주시민교육과
④ 교육청은 교무회의와 교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민주주의 연수를 실시한다.	민주시민교육과
제33조【교구 및 교과서 선정】	
교구 및 교과서 선정은 교과 협의회 추천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학교교육과
제34조【방과후학교】	
① 교육청은 방과후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 및 교육청 지침에 따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 교사가 실시하도록 하며, 학생을 강제로 참여시키는 형태의 교과 보충수업, 선행교육 및 성적에 따른 일부 학생에 대한 예산지원 등 비교육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교육혁신과
②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실시한다.	교육혁신과
③ 교육청은 초·중학교의 경우 경시대회와 특목고 진학, 각종 시험을 목적으로 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중·고등학교에서 입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학습 및 경시대회를 실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교육혁신과 학교교육과
④ 교육청은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행정업무, 중등학교의 방과후학교 행정업무가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노력한다.	교육혁신과
⑤ 교육청은 방과후 담당교사에게 방과후강사비 품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교육혁신과

제35조【자율학습 등】	
① 교육청은 자율학습 운영과 관련하여 경비를 징수하거나 불법 모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교육혁신과
② 교육청은 중·고등학교의 자율학습과 관련하여 초과근무한 교사에 대하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교육혁신과
제36조【감사제도】	
① 교육청은 학교 감사 시 교사의 교무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는 가급적 교육전문직원이 담당하도록 한다.	감사관
②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안내한다.	감사관
제37조【학교평가 개선】	
교육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활동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학교평가를 실시한다.	학교교육과
제38조【교육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의 합리화】	
① 교육청은 학교예산 편성 시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직원의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하도록 지도한다.	예산과
② 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학교 예산 및 결산 등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 게시 등 학교실정에 맞는 공개방법으로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에 공개한다.	예산과
제39조【학부모 부담 교육비 경감】	
학부모 부담의 교육경비가 들어가는 제경비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학부모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한다.	민주시민교육과

제40조【사립학교 지도·감독】	
①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사 임용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제교사의 채용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한다.	교원인사과
②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정규 교사 비율이 가급적 공립학교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한다.	교원인사과
③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해야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공립과 동등한 지원기준에 의해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시설과
제41조 【사립학교의 인사】	
① 교육청은 사립학교 내에서 부당한 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한다.	교원인사과
②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학교별로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남·여 휴게실을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단위학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휴게실 설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권장한다.	시설과
제42조【교사의 후생복지】	
① 교육청은 탈의실과 샤워실 설치를 위해 신설 및 전면 개축학교는 설계에 반영하고, 기설학교는 여유 공간 확보 시 설치하도록 지도한다.	시설과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건강과
② 교육청은 인후염, 성대결절 등으로 인해 수업진행이 어려운 교사를 위해 단위학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업용 무선마이크 및 앰프 등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교육과
③ 교육청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별 복지포인트를 타시도 교육청 수준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재무과
제43조【내부고발자의 인권보호】	
교육청은 공익제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노력하며, 공익제보자가 공개에 동의하여 표창을 신청하는 경우 『전북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등에 따라 이를 검토한다.	감사관

제44조【출장여비와 연구비】	
① 교육청은 교육 활동(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야영, 수학여행, 교외 특별 활동 등) 및 교육 행정업무와 관련된 각종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 지급하고, 출장 중에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면 학교회계 편성 및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지도한다.	재무과
② 교육청은 현장체험활동(수련활동, (비)숙박형 현장체험활동)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 드러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전계획에 따라 교육 활동을 수행한 경우와 사전답사의 경우에도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하도록 지도한다.	교원인사과
③ 교육청은 교사가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이전하게 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전비와 국내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예산과
제45조【학급운영비】	
학교장은 학급교육활동경비를 교원이 요청할 경우에 개산급으로 지출하고, 개산급을 받은 교원은 「전라북도공립학교회계규칙」 제42조의 규정을 적용 받도록 한다.	학교교육과
제46조【여교사의 권리와 모자보호】	
① 교육청은 출산한 여교사를 위해 학교별로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유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교원인사과
②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법령 등(규정, 예규, 지침 등)에 따라 육아시간을 보장하도록 지도한다.	교원인사과
③ 교육청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포함) 후 1년 미만의 여교사에 대해서는 정규 수업과 회의 참석 등 기본적인 근무 이외의 근무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교원인사과
④ 교육청은 육아 휴직 후 복직하는 교원에게 원적교 복직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 정원 수급 상황과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복직 발령한다.	교원인사과

제47조【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규제 등】	
① 교육청은 학교장이 성희롱 및 성폭력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고 지도한다.	인성건강과
1. 연 1회 이상 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인성건강과
2.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인성건강과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의 마련	인성건강과
4.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인성건강과
5. 학교장이 성희롱·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상담, 피해자 보호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즉시 관련 기관 신고 및 상급기관에 보고	인성건강과
제48조【유치원 교육 여건 개선】	
① 교육청은 점차적으로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수를 아래와 같이 하도록 노력한다.	행정과
1. 만 5세반은 18명 이하	
2. 만 4세반은 14명 이하	
3. 만 3세반은 10명 이하	
4. 혼합연령반은 단령반의 학급당 유아수의 평균으로 한다.	
② 교육청은 주간계획 및 일일계획 등을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 활용하고 별도의 결재를 받지 않도록 지도한다.	학교교육과
③ 교육청은 체험학습을 위한 차량 탑승 시 운전자의 음주여부, 카시트 탈부착 등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를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학교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④ 교육청은 유아학비 카드 인증 및 정산업무를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예산과
⑤ 교육청은 놀이중심교육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현장 중심의 연수 실시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학교교육과
⑥ 교육청은 유치원평가를 간소화하여 교원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학교교육과

제49조【특수교육 여건 개선】	
① 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 특성으로 인한 교사의 신체·정신적 피해 발생에 대해 교사 보호 조치 및 치유회복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교원인사과
② 교육청은 특수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운영비에서 특수학급당 특수교육활동경비 예산을 기본 350만원 이상 책정하고, 학생 1인당 50만원 이상 추가편성 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한다.	교육혁신과
제50조【특성화 고교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① 교육청은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용역시 전북교사노조의 의견을 청취한다.	미래인재과
② 교육청은 전문교과 교원의 전공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체 현장 연수를 지원한다.	미래인재과
③ 교육청은 학교에서 실험실습비가 기능반 운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며, 기능반은 정규수업을 마치고 훈련에 임하도록 한다.	미래인재과
④ 교육청은 특성화고 교사의 전공 교과에 대한 연수시 예산이나 연수 운영 형편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미래인재과
⑤ 교육청은 특성화고 학생의 실습 및 취업을 위하여 단위학교에서 안전 사고 예방, 직업윤리 등 직업준비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미래인재과
⑥ 교육청은 실습일지 작성여부를 학교에서 결정하고, 소모품 대장은 교육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비치할 수 있으며, 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의 원활한 교수, 학습을 위하여 실습재료, 실습현황 등의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미래인재과
제51조【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	
① 교육청은 학교장이 교실의 실내 측정온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지도한다.	인성건강과

② 교육청은 학교장이 교실의 조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지도한다.	인성건강과
③ 교육청은 도로와 인접한 학교가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 시 방음대책을 수립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한다.	시설과 인성건강과
④ 교육청은 학교장이 교실의 공기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안내하고 지도하며, 교실에 적정한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인성건강과
⑤ 교육청은 교내 온수 수세 시설을 연차적으로 완비한다.	시설과
⑥ 교육청은 관계 법령에 의거 각급 학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노력한다.	시설과
⑦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환경 친화적 소재로 교체하며, 학교 신·개축 시 새집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시설과
⑧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지하수, 상수도 등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인성건강과
⑨ 교육청은 각급 학교 정보 예산 편성시 각 교실의 교육용 컴퓨터에 투자를 우선하도록 권장한다.	미래인재과
제52조【학생 복지】	
① 교육청은 학교 신·개축 및 화장실 사업 시 여학생 대변기 수를 남학생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화장실 시설은 학생들의 체형과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대화되도록 노력한다.	시설과
② 교육청은 각급 학교 매점의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재무과
③ 교육청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	민주시민교육과

제53조【학생 자치활동】	
①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민주시민교육과
②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생의 의견을 반영한다.	민주시민교육과
③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학생 자치활동 공간(학생회의실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민주시민교육과
제54조【학교 급식의 개선】	
교육청은 급식시설 현대화 및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인성건강과
제55조【장애인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① 교육청은 장애인교사의 처우 개선 및 장애유형에 따른 지원계획, 전보 등 주요 정책수립 시 교사노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교원인사과
② 교육청은 장애인교사가 전보를 희망할 경우 장애 유형, 장애 정도, 희망 근무지를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교원인사과
③ 교육청은 장애인교사가 장애로 인하여 불공정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도한다.	교원인사과
제56조【보건교육의 활성화】	
① 교육청은 교외에서 주최하는 체육활동에 안전요원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보건교사에게 정당한 수당을 지급한다.	인성건강과
② 교육청은 먹는 물 관리, 공기 질 관리(미세먼지, 석면 등) 업무를 학교 자치를 통해 업무분장하도록 지도한다.	인성건강과

제57조【전문상담교사의 근무 조건 향상】	
① 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상담 내실화를 위하여 상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교원인사과
② 교육청은 전문상담교사의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교사의 요구를 반영한 상담관련 연수를 다양하게 실시하도록 한다.	민주시민교육과
③ 교육청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상담교사에게도 교직수당 가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받아 해당 부처에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	민주시민교육과
제58조【학교상담실 환경 개선】	
① 교육청은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실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민주시민교육과
② 교육청은 상담실이 미구축된 학교의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민주시민교육과
부 칙	
제1조【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민주시민교육과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민주시민교육과
제2조【용어의 명확화】	
위 조항들에서 언급된 교장은 원장, 교감은 원감, 학생은 유아를 포함한다.	민주시민교육과
제3조【협약갱신】	
교육청과 전북교사노조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 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민주시민교육과

<p>제4조【보충협약 및 재교섭】</p>	
<p>교육청과 전북교사노조 쌍방은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민주시민교육과</p>
<p>제5조【이행계획서 작성】</p>	
<p>교육청과 전북교사노조는 단체협약의 이행점검표와 정책업무합의안의 이행 현황을 상호 합의하여 작성한다.</p>	<p>민주시민교육과</p>
<p>제6조【이행방법】</p>	
<p>① 교육청과 전북교사노조는 본 협약의 항목별 이행 추진계획 및 결과를 정책협의회에서 점검할 수 있다.</p>	<p>민주시민교육과</p>
<p>② 교사노조에서 미이행 사례를 제시할 경우 교육청은 이를 확인하고, 이행 상황 결과에 따라 미이행 학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지도한다.</p>	<p>민주시민교육과</p>
<p>③ 교육청은 연 1회 전북교사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의를 통해 점검사항을 선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되 노조의 요청 시 서면으로 한다.</p>	<p>민주시민교육과</p>
<p>④ 교육청은 이 단체협약 내용에 대하여 교육청(교육지원청)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회의 등을 통해 안내하며,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유·초·중·고 관리자 연수를 실시하도록 지도한다.</p>	<p>민주시민교육과</p>
<p>⑤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계 및 노동관계 법규 등에 따른다.</p>	<p>민주시민교육과</p>
<p>제7조【협약의 보관】</p>	
<p>본 단체협약서는 이를 증거하기 위해 3부를 작성하여 교육청과 전북교사노조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p>	<p>민주시민교육과</p>

『전라북도교육청-전북교사노동조합』

2020 단체협약 합의서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북교사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해 『2020 단체협약』을 최종적으로 합의함

□ 일시 : 2021. 1. 28.(목) 16:30

□ 장소 : 전라북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

전라북도교육감

전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승환

정재석

김승환

정재석